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6월 24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협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4년 제1차 조심협 개요 >

- 일시/장소 : '24.6.24.(월)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법률자문관,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대참), 자본시장조사과장
(검 찰) 공준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금감원) 김정태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박종식 시감위 본부장보

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6.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되었다. 금융위는 금번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이 증원(5급 1명, 6급 1명)된다.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4.1.19.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해짐에 따라, 금번 증원된 조사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 금융위·검찰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운영

- ▶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 ▶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①검찰과 협의시 또는 ②검찰통보 후 1년 경과시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 가능
 -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에서 제외

* 자본시장법 42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80조, 조사업무규정 [별표 2]·[별표 3]

둘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작년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셋째,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협외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권위) → 수사(검찰) → 형사처벌(법원)’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특성상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금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되는 상황이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조심협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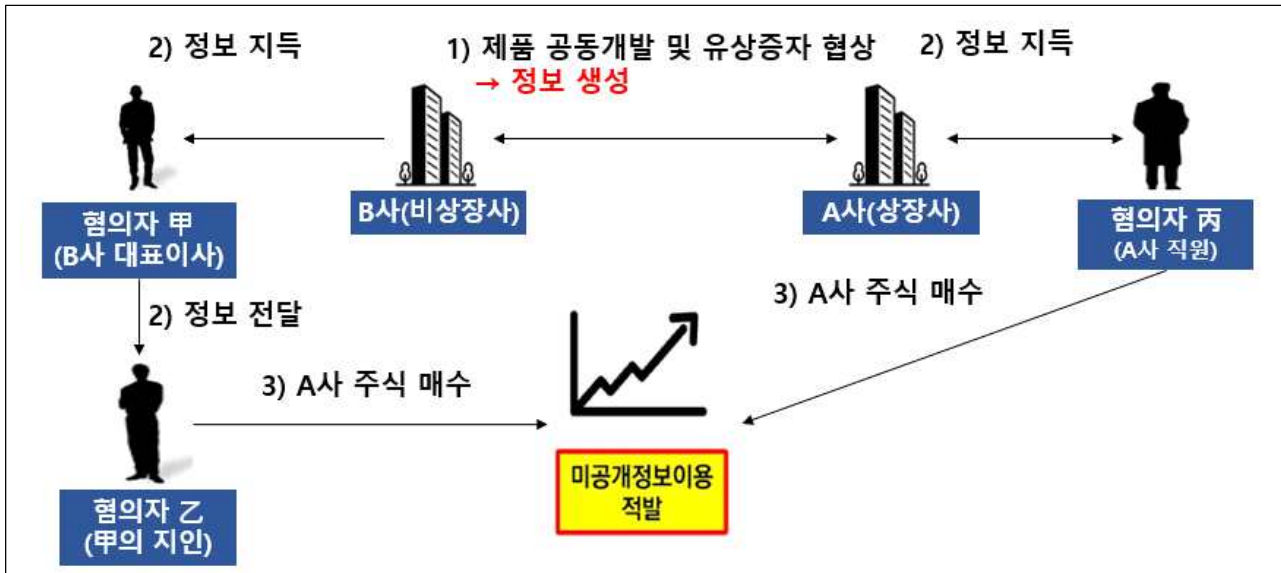
※ **[별첨 1]** '23년 하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별첨 2]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책임자	서기관	김윤희	(02-2100-2600)
		담당자	사무관	최민혁	(02-2100-2606)
			사무관	김하민	(02-2100-2579)
<공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책임자	과 장	정현직	(02-2100-2601)
		담당자	사무관	김관범	(02-2100-2596)
<공동>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최치연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호	(02-2100-2688)
<공동>	금융감독원 조사1국	책임자	국 장	이승우	(02-3145-5550)
		담당자	팀 장	장정훈	(02-3145-5582)
<공동>	한국거래소 심리1부	책임자	부 장	이근영	(02-3774-9140)
		담당자	팀 장	이종상	(02-3774-9142)



사례 1 상장회사 계약 체결 상대방(준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 ①甲은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 A사의 미공개 정보를 乙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으며, ②丙은 근무 중 A사의 미공개정보를 지득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

① B사 대표이사 甲은 A사와 유상증자 참여 및 양사 간 제품 공동 개발 추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 정보가 공개되기 전 투자정보를 공유하던 지인 乙(1차 정보수령자)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乙이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음

② A사 직원 丙은 근무 중 동 정보를 지득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A사 주식을 매수

□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사건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

◆ (투자자 유의사항) 상장회사의 계약 체결 상대방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장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경우 사실상 내부자로 간주되고,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자도 이용한 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상장사 임직원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단기매매차익 발생)으로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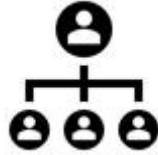
사례 2 허위의 우회상장 정보 등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

① 허위정보 유포



- 허위 우회상장 정보를 포털, SNS 등에 유포

② 불법 투자자 모집



- 무인가 주식중개업체를 동원하여 투자자 모집

③ 부정거래



- 가치 없는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

□ 甲·乙·丙은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한 수단·위계를 사용하여 보유중인 비상장사 A사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고가로 매출·매도

① 비상장사 A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은 포털(주식토론방), SNS 등을 통해 실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가증권 상장회사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및 바이오 신사업 추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 무인가 주식중개업체를 통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을 일반투자자 수백명에게 매출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② 무인가 주식 중개업체 운영자 乙·丙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甲의 A사 불법 주식 매출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한편,

- 직접 보유하던 A사 주식까지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사건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

◆ (투자자 유의사항)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추진내용,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권위) → 수사·기소(검찰) → 재판(법원)' 순으로 진행

1. 시장감시 현황 (거래소)

□ 시장경보 건수는 월평균 198건이고, 예방조치 건수는 월평균 436건입니다('24.1월~5월).

구 분		'24.1월	'24.2월	'24.3월	'24.4월	'24.5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180건	168건	238건	136건	164건
	투자경고	25건	26건	20건	14건	17건
	투자위험	1건	0건	0건	1건	0건
	소 계	206건	194건	258건	151건	181건
예방조치 (서면·유선경고 등)		423건	397건	454건	486건	420건

2. 심리 현황 (거래소)

□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월평균 약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24.1월~5월).

	'24.1월	'24.2월	'24.3월	'24.4월	'24.5월
신규착수	8건	13건	10건	12건	16건
종결	7건	6건	16건	8건	13건
진행중	13건	20건	14건	18건	21건

3. 조사·조치 현황 (금융위, 금감원)

□ 금융위·금감원은 '24.5월말 현재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4.1월	'24.2월	'24.3월	'24.4월	'24.5월
조 사	신규 착수	15건	11건	26건	17건	20건
	종결	7건	5건	8건	4건	9건
	진행중	174건	180건	198건	211건	222건
조 치	고발	-	1명, 1개사	1명	-	4명, 2개사
	통보	6명, 7개사	8명, 1개사	2명	-	13명
	과징금	3개사	1명, 1개사	23명, 1개사	1명	-
	과태료·주의·경고	-	-	-	1명	-
	합계	6명, 10개사	10명, 3개사	26명, 1개사	2명	17명, 2개사